

국내사업장 신규채용자의 안전교육 시스템에 대한 연구

- A Research of Safety Education System for New Employer
in Korea Enterprise -

성 호 경*

Sung, Ho Kyung

강 경 식**

Kang, Gyong Sic

ABSTRACT

Comparing the rate of accident in 1999 with 1998, that has been increased about 0.06%. The 56 percentage of industrial accident had been occurred by new employer, who has been worked less than 1 year, in 1999, therefore safety training and education is required for those new employer. This study is present the analysis and investigation of safety training and educational situation and consider a counterplan

1. 서론

1.1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지난 98년 IMF를 맞이하면서 근로자, 설비가동률, 신규채용자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감소되어왔으나, 현재 시장경제와 생산경제가 살아나면서 2000년 8월 현재 월평균근로시간이 204.9시간(주당 47.2시간)으로 전년동기와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근로자들이 위험한 사업장에 노출되는 횟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난 99년 재해율이 0.74%로 98년 대비 0.06%p 증가한 상태이다.

* 명지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사과정

**명지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또한, 99년도 입사근속기간별 산업재해는 6개월 미만 근속자가 전체의 46.5%인 25,756명의 재해를 입었으며,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에는 무려 56%인 31,066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신규채용자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신규채용자의 재해는 교육적원인인 안전의식 및 지식부족에 의해 재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재해율을 중심한 그 실태조사와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교육적대책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신규채용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의 법적 연구

2.1. 교육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안전·보건교육)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내용)에서는 “건설업 종사자를 제외한 자는 8시간 이상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는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사업간호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사업주는 신규채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2.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 43조 제1항(건강진단)에서는 사업주가 신규로 채용한 당해 근로자에게 작업배치하기 전에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 제1항에서는 채용 시 건강진단에 대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으로는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 증상, 혈압·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체중·시력 및 청력, 신장·색신 및 혈액형, 흉부방사선과 직접촬영, 혈청 G·O·T 및 G·P·T, 총 콜레스테롤, 치과검사 등이 있다.

3. 우리나라 신규채용자 동향 및 재해 현황

99년도 산업재해 통계에는 전체의 76%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고, 입사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평균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0년도 8월 중 5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자수는 5,776,301명이며, 신규채용자는 99년 같은 기간보다 8,000명이 많은 19,000명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어, 신규채용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3-1> 연도별 재해현황

구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재해자수	71,548	66,770	51,514	55,405
재해율	0.88	0.81	0.68	0.74
사망자수	2,670	2,742	2,212	2,291
만인율	3.27	3.33	2.92	3.06

※노동부 '90-'99산업재해분석, 91-2000

<표3-2> 규모별 재해현황(99년 노동부자료)

구분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총계	근로자수	1,250,070	1,506,604	1,368,909	536,058	2,071,090
	재해자수	14,890	12,011	7,584	2,179	5,583
	사망자수	432	524	451	132	371
	재해율	1.19	0.79	0.55	0.40	0.26
비 건설업	근로자수	985,367	1,162,815	995,381	387,862	1,517,827
	재해자수	11,798	9,578	5,929	1,824	5,340
	사망자수	314	398	303	99	339
	재해율	1.19	0.82	0.59	0.47	0.35
건설업	근로자수	264,703	343,789	373,528	148,196	553,263
	재해자수	3,092	2,433	1,655	355	243
	사망자수	118	126	148	33	32
	재해율	1.16	0.70	0.44	0.02	0.04

※노동부 '99 산업재해분석, 2000

<표3-3> 입사근속기간별 재해현황(99년 노동부자료)

구 분		계	0~6개월	6개월~1년	1년 이상
총계	재해자수	55,405	25,756	5,310	24,339
	백분율	100	45.65	9.58	43.496
	사망자수	2,291	880	190	1,221
	백분율	100	38.41	8.29	53.3
비 건설업	재해자수	44,439	16,330	4,637	23,472
	백분율	100	36.75	10.43	52.82
	사망자수	1,708	414	146	1,148
	백분율	100	24.24	8.55	67.21
건설업	재해자수	10,966	11,363	884	867
	백분율	100	85.96	6.14	7.90
	사망자수	583	466	44	73
	백분율	100	79.93	7.55	12.52

※노동부 '99산업재해분석, 2000

<표3-4>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현황(연도별)

(단위 : %)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중소규모사업장(300인 미만)	76	86	76

※ 노동부 '97-'99산업재해분석, 98-2000

<표3-5> 신규채용자 재해현황(연도별)

(단위 : %)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입사근속기간 1년 미만	59	56	56

※ 노동부 '97-'99산업재해분석, 98-2000

4. 우리나라의 신규채용자 교육 실태 및 문제점

4.1. 안전교육의 실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조사 발표한 “사업장 안전교육실태조사 및 국내 비교 연구” 내용을 인용하면 신규채용자 교육의 법정 교육시간 8시간 이상을 정확하게 이수한 경우가 5%에 불과하였으며, 신규채용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가 14%이다. 또한, 신규채용자 교육의 효과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경우가 9%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에서는 신규채용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실시에 대한 확인이나 미이행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의 실효를 견우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시행하고 있는 곳도 그나마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교육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2. 문제점

99년의 경우 재해발생 분포를 보면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7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1년 미만 근속자인 신규채용자의 경우 매년 56%이상 높은 재해가 발생하여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은 작업에 임하기 전에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① 사업장에서는 신규채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② 전문지식을 갖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강사가 없다.
- ③ 중소기업의 사업장의 경우 수시로 신규채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전교육실시가 어렵다.
- ④ 현재 안전교육은 생산 인사, 노무 등의 교육과 병행하여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⑤ 매년 신규채용자에 의한 재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근본대책이 없다.

5. 대책방안

가. 사업장의 작업여건이라든가 안전의식이 결여된 신규채용자에게 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이수자에게는 교육수첩을 발급하고, 발급된 교육수첩을 사업주에게 제출 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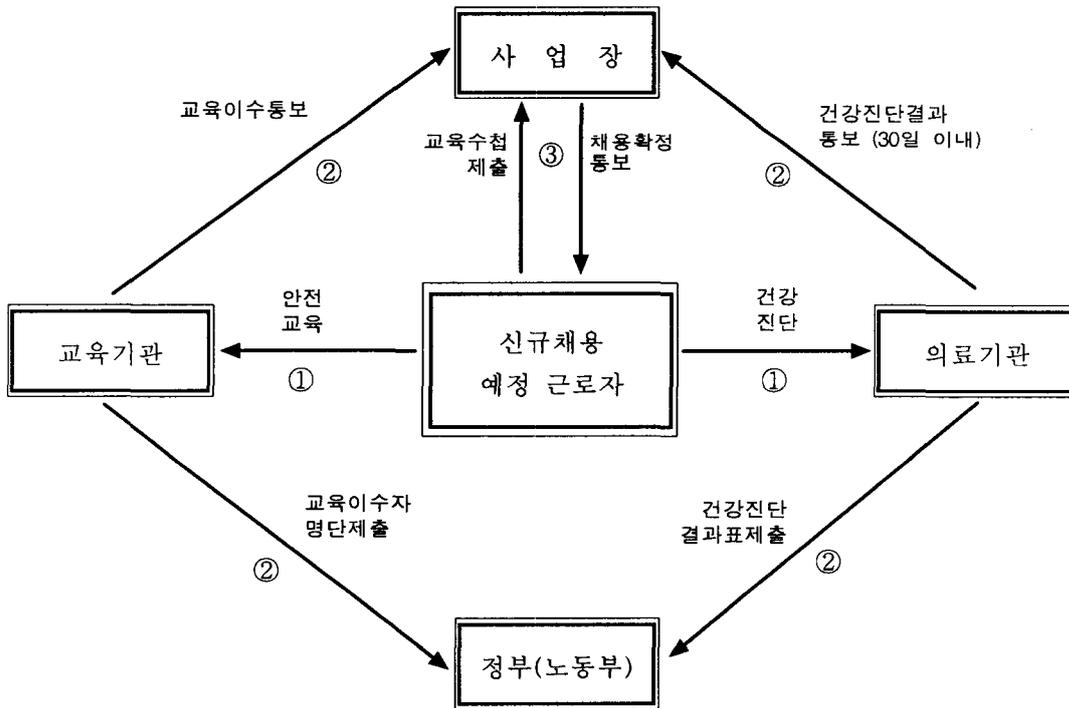
나. 교육실시방법으로는 사업주가 원하는 지역의 전문교육기관을 선택하여 신규채용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토록 한다.

다. 교육은 비건설업 신규채용자와 건설업 신규채용자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비건설업 신규채용자 : 1일 8시간 집합교육
- 건설업 신규채용자 : 1일 1시간 집합교육

라. 사업장에서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건강진단 실시일에 안전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사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채용토록 함으로서, 교육이 반드시 이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그림 5-1] 교육시스템흐름도

마. 교육비는 신규채용예정자가 교육비 영수증과 교육수첩 제출시 사업주가 지불하도록 한다.



[그림 5-1] 교육시스템흐름도

6. 결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부여가 가능한 교육전문기관에 시스템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전문강사의 활용, 교육교재개발 등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며, 정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안전교육 이행여부에 대한 불신의 해소와 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은 신규채용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신규채용 시부터 이수케 함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등 근원적 재해예방의 해결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7. 참고 문헌

1. 성호경 : 최신산업안전보건법해설, 형설출판사, 2000
2. 김병석 외 : 산업안전현장실무, 형설출판사, 2000
3. 노동부 : '90-'99산업재해분석, 91-2000
4.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법령, 2000
5. 노동부 :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2000
6. 한국산업안전공단 : 사업장안전보건교육실태조사 및 국내비교연구, 1998
7.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U. S. A. Vol 161. No.1, 2000
8. Encyclopedia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Genova : ILO, 1999

저 자 소개

성 호 경 : 홍익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취득

명지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박사과정 중

현재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교육부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저서로는 최신산업안전보건법해설(형설출판사, 2000)을 비롯하여 다수의 저술과 안전교육 교재제작 및 편집하였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 인간공학, 사이버교육, PL법 등이다.

강 경 식 : 현 명지대학교 산업공학과 정교수

명지대학교 산업안전센터 소장 및 안전경영과학회 회장

관심분야 생산운영시스템, 시스템안전